

TIPLONews 한국어본

2020 년 1 월호(K245)

K191211Y1

01 대만변리사협회창립 10 주년을 맞아「2020 지혜재산권 제안백서」를 발표

대만변리사협회¹⁾는 2019 년 12 월 11 일 「2020 지혜재산권²⁾ 건의안」²⁾을 발표하였고 이에 4 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 해당 법제 완비가 미비 (2) 유능한 심사인력 부족 (3) 비전을 제시못하는 정책 (4) 아직은 부족한 활성화; 이와 관련, 10 대 건의사항을 제출, 정부해당부문에 변리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정부와 함께 대만특허의 발전전략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지혜재산권 업계를 위하여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특허가 종래의 수량과 규모를 위주로 하던 것에서 품질과 효과와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로 인하여 대만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특허영역의 높은 수준을 창조하게하고, 고품질의 신청, 고효율의 심사, 높은 효과와 이익을 창출하는 운용하도록 한다.

10 가지 건의 조치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허 법제의 최적화 : 방식심사, 실질심사, 특허 활성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4 가지 방침을 포함하여 9 개의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
2. 변리사 법제 완비: 변리사시험 자격 및 과목 수정; 개업형태 개방, 이종직종 결합, 법인사무소를 포함; 변리사업무범위의 완비; 재직연수규정; 변리사창업보험기획등
3. 특허보급 기금의 설립추진: 연간 20%에서 30%의 세입 특허 수수료로 , 정부 예산절차에 따른 지출과 기금의 이자를 기금의 원천으로 삼는다.
4. AI 관련 지혜재산권 보호 정책을 연구 제정: 소유권규정, 권리침해책임, 보호전략등을 명확히 한다.
5. 특허심사품질을 최적화: 심사강화, 확실한 검색, 외부심사 폐지

6. 지혜재산권 활성화 제도 추진: 지혜재산권 운영 플랫폼 구축, 무형자산용자추진, 대학의 기술이전 회사화, 특허보험 개발
7. 특허권 평가 지침서 제작: 특허법의 평가방침, 기술특징, 기술 상태 및 법률상태를 명확히 규정한다.
8. 특허정보서비스를 강화: AI에 의한 분류, AI에 의한 검색, 공공서비스개방을 추진
9. 해외특허 원조체제를 건립: 해외특허소송보험제도를 추진
10. 지혜재산권 국제교류협력을 강화: 민간역량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혜재산권싱크탱크를 성립한다. (2019.12)

역주:

- 1) 專利師公會(Taiw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를 지칭.
- 2) 대만의 지혜재산권은 한국의 지식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

K191126Y2

02 지혜국「상표법 부분조문 수정초안」공고

대만 경제부 지혜국¹⁾은 2019년 11월 26일 발행된 보도자료에서, 상표법 제도가 대만의 심사실무수요에 부합하도록, 상표전담기관이 2019년부터 상표법 수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상표심사품질 자문회의 및 상표법 부분 조문 수정초안 공청회등 여러차례의 토론을 거친후, 2019년 10월 15일 공청회하였다. 이를 통해 각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상표법 부분조문 수정초안」을 논의하고 제기하였다.

이번 초안 조문은 총 14조를 수정하고 2조를 추가,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안 제 6조 제 2항은 변호사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상표 대리인의 자격을 명문화하고, 같은 조 3항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기관이 상표 대리인을 위하여 관리항목 및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표출원의 상표가속 심사제도 적용 범위는「상표등록 출원안」으로 제한한다. 원본 초안에 대한 수정 조문 제 1 장「총칙」의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제 2 장 제 1 절「상표신청등록」의 제 19 조 제 8 항으로 옮기고, 제 104 조를 조정하여「가속심사」신청 수수료의 근거를 만든다. 향후에는 특허가속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작업 요점을 규정하고,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초안은 원래 조문 제 30 조의 제 1 항 제 15 항「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등의 요건을 삭제하려 했으나, 공청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 해당 조항 삭제는 다른 분쟁 등이 파생될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행 상표등록의 일방심사절차로는, 사실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유럽연맹 상표법 제 6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현행 제 30 조 제 1 항 제 15 의 등록사유 관련조항을 초안 제 57 조의 제 3 항으로 옮겨,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무효의 근거가 되게 하였다: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여 변호한 후 유효여부를 확정하는데 이는 5 년이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초안에서는 원래 상표법 제 4 절의「이의」제도부분의 삭제를 고려하였고 이미 공청회를 통하여 외부의 공감을 얻었으나, 향후의「상표분쟁 소송 대심제도」의 전체적 수정 계획을 반영하고, 부분 수정을 통한 법률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금회 부분 수정조문 초안의「이의」부분은 보류하여, 향후 해당부분 수정할 경우에 일괄 조정하기로 한다. (2019.11)²⁾

역주:

1) 經濟部智慧財產局的 약칭

2) 영문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www.tipo.gov.tw/en/cp-282-859470-8b637-2.html>

K191204Y8

K191203Y8

03 무역법 부분조문 수정안 통과, 원산지 표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제도를 증설

무역법 부분조문 수정안이 12월 3일 3독¹⁾으로 통과되었다. 금회 수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대만제조 (MIT) 상품의 국제적 명성과 대만의 전반적 경제 및 무역이익, 특히 미국중국 무역분쟁에서 양측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일부 부도덕한 업체가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대만제조로 변경하거나,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여 관세를 납부 안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부는 벌금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허위 원산지 명기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벌금을 높이어 행정적 필요에 부합토록 하였다. 금회 수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업자가 허위로 해당무역허가 및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해당 허가서 및 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수정조문 제 17 조)
2. 수출입 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외국이 대만업체를 조사하고, 국가의 이익과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한다. (수정조문 제 17 조의 1)
3. 제조업체가 전략적 첨단제품을 불법적으로 특정제한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증액한다. (수정조문 제 27 조)
4. 제조업체가 전략적 첨단제품을 불법적으로 특정제한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지하고, 부도덕한 업체가 부실증명, 허위 원산지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것,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처벌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수정조문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 (2019.12)²⁾

역주:

1) 3 독 (Third Reading)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중 하나를 지칭.

2) 영문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www.trade.gov.tw/English/Pages/Detail.aspx?nodeID=86&pid=686583>

K191218Y9

K191217Y9

04 입법원, 법안을 통과, 지혜재산권 및 상업법원을 성립 2심 2급제를 채용

사법부는 2019년 12월 17일 신문을 통해, 입법원이, 「상업사건심리법」 및 「지적재산 및 상업법원 조직법」에 대해 3독 통과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여, 중요한 상업사건의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사건심리법」도합 7장 총계 81 조 조문 제정
 - 1) 과학기술을 사용한 재판: 모든 서면 변론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격심문할 수 있고, 인터넷이 법원으로 오는 수고를 대신할 수 있게하여, 당사자가 법원을 사용함에 편리함을 도모한다.
 - 2) 전문법원 설립: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이하, 상업법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며, 중요한 상업사건에 대하여 2급¹⁾²심제를 채택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조기에 판결나게 한다.
 - 3) 사건은 변호사에 의해 대표: 중대 상업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의해, 사건분쟁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켜 심사의 효율을 제고한다.
 - 4) 강제중재절차 채택: 중대한 상업 사건은 우선 중재를 시도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 담당자는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협조한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피로를 감소하고, 신속한 분쟁종결을 도모한다.

- 5) 전문가증인 및 당사자 조회제도 도입: 당사자는 전문가 증인을 불러 조회나 청구설명에 대한 의견제공을 요청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6) 비밀유지명령: 절차상의 문서, 검사물 또는 감정이 필요한 자료, 영업비밀에 관계하는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내려서, 그 해당 실체 및 영업비밀을 유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2. 「지혜재산법원조직법」을「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조직법」으로 수정, 상업법원과 이전 지혜재산법원을 합병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이 된다.
- 1) 상업법원은 3인 합의심리를 사용하고, 2급 2심제를 채택하며, 상업사건 심리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중요 상업사건의 심리를 주관한다.(수정조문 제 2 조, 제 3 조, 제 6 조). 아울러, 지혜재산 법정 및 상업법정을 나누어 전문심리(수정조문 제 9 조, 제 10 조, 제 15 조)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상업전문 법관은 상업전문의 변호사, 중앙연구원 관련 연구자 또는 공무원 직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 2) 상업조사관을 설치하여, 회계, 투자, 재무분석, 경제및 금융시장등의 전문인원을 갖추고, 법관이 해당자료 및 문제의 수집, 분석, 판단하는데 협조하도록 한다. (수정조문 제 16 조, 제 17 조)

상업사건심리법,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조직법 시행후, 상업법원은 획기적인 심리제도를 통하여, 중요한 상업사건을 신속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낼수 있게 하여, 대만의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019.12)

역주:

- 1) 2급법원: 1급은 지방법원, 2급은 고등법원, 3급은 최고법원을 지칭.